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0. 6 선고 2021가단15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68819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0. 6 선고 2021가단1579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D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2. 6. 한 상속포기를 취소한다. 원고가 D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31. 접수 제4320호로 마친 2019. 12.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2. 4. 접수 제22535호로 마친 2019. 12.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유효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D은 2020. 1. 20. 원고에게 122,840,000원을 2020. 1.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망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9. 12. 1. 사망하였고 자녀인 D, 피고들, F이 망 E의 상속인들인데, F이 2019. 12. 18. 상속을 포기하여 D,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E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20. 2. 6.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D은 위 상속포기 신고 당시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이외에도 순천세무서에 체납한 부가가치세 6,000만 원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대출 채무가 있었으므로 D의 위 상속포기 신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인 사해행위이고 피고들은 D의 상속포기 신고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D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2. 6. 한 상속포기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D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별지